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56
----------	-------

발의연월일 : 2026. 2. 13.

발 의 자 : 이용우 · 김태선 · 오세희
박 정 · 김성희 · 박지원
임미애 · 서영석 · 안호영
박민규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2009헌마256등).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국민투표는 선거와 달리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확인하며 재외국민 중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로 한정하는 것은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국민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거소신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안 제14조),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9장의2).

이와 더불어 국민투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권 동일하게 18세로 하향하고자 함(안 제7조).

주요내용

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함(안 제7조).

나. 투표인명부 작성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요건을 삭제함(안 제 14조).

다. 국민투표 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준용함(제48조의2 신설).

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함(안 제52조의2 신설).

마.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신설).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7조 중 “19세”를 “18세”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7조에 따른 투표권자(제91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에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이 법에 규정된 운동 이외의 운동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동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제5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의2(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

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인”으로, “재외선거인명부”는 “재외투표인명부”로, “국외선거운동”은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본다.

제91조의4(벌칙의 적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條(投票人の 定義) 이 法에서 “投票人”이라 함은 投票權이 있는 者로서 投票人名簿에 登 載된 者를 말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 이 법에서 “투표인”이란 투표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투표인명부, 제91 조의3에 따라 「공직선거법」 을 준용하는 재외투표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第7條(投票權) 19세 이상의 國民 은 投票權이 있다.	第7條(投票權) 18세 ----- -----.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國民投票를 실시할 때에는 그 때마다 區廳長(自治區의 區廳 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 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 한다)·市長(區가 設置되지 아 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 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邑長·面長 (이하 “區·市·邑·面の 長” 이라 한다)은 國民投票日公告 日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 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第14條(投票人名簿의 작성) ①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 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군(이하 “구·시 ·군”이라 한다)의 장은 국민 투표일 전 22일(이하 “투표인 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 재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7조에 따른 투표 권자(제91조의3에 따라 「공직 선거법」을 준용하는 재외투표 인명부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投票區別로 調査하여 國民投票日公告日로부터 5日 이내에 投票人名簿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신설>

<신설>

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제48조의2(운동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이 법에 규정된 운동 이외의 운동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운동에 관하여 준용하는 「공직선거법」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칙을 적용한다.

제52조의2(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의 사전투표소 및 사전투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의2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

제91조의2(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민투표 공고일 후 10일부터 국민투표일 후 30일까지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1조의3(재외국민투표에 관한 「공직선거법」의 준용)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4장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로,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는 “국민투표”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투표”로, “재외

<u><신 설></u>	<u>선거인</u>은 “<u>재외투표인</u>”으로, “<u>재외선거인명부</u>”는 “<u>재외투표 인명부</u>”로, “<u>국외선거운동</u>”은 “<u>재외국민투표에 관한 운동</u>”으 로 본다. <u>제91조의4(벌칙의 적용)</u> 재외국 민투표에 관하여 준용하는 「<u>공직선거법</u>」의 해당 조문에 대하여 벌칙이 있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벌 칙을 적용한다.
---------------------------	--